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
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
함(안 제1조)

-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사업 시행 지원에 관한 시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사업시행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은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지역치매센터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또는 검사 등)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치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2. 제7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설치·위탁 운영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제8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치매관리법 -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채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13조(예산지원)시장은 치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치매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인천시 치매 관리 시행 계획 추진
 -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의한 설치 운영비
 -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 조례 안 제13조(예산지원)
- 보조의 범위
 -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및 그 가족지원 사업비
 - ① 광역치매센터 운영: 국비70%, 시비30%
 - ②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국비 50%, 시비25%, 군구비 25%
 - ③ 군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 시비50%, 군구비 50%
 - ④ 군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 시비50%, 군구비 50%

○ 예산 소요 추정

사업명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소요예산 (천원)	시행 주체
광역치매센터 운영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의거 광역 치매센터를 구축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추진 - 치매관리법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설치) - 인건비 50~55%, 운영비 45~50%	3,067,000	시
치매치료비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 치료 관리함 으로서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고, 중증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치료비 본인부담 금 지원	5,553,328	군·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주간에 보호하며,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중증심화 방지 및 환자 가족 지원 - 2000년부터 추진 운영사업 -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 자 인건비 및 운영비	21,427,669	군·구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조기 검진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 관리함으로 치매 유병율 감소 효과 도모 - 2010년부터 추진 운영 사업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인건 비 및 운영비	8,261,012	군·구

나. 추계 결과

○ 치매예방관리사업은 2016년 7,226,000천원이 소요되어
향후 5년간 38,309,009천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국고보조금(기금), 시비, 군·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신중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광역치매센터 운영	412,000	420,000	427,700	439,600	448,000	2,147,300
	치매치료비 지원	523,000	538,690	554,850	571,490	588,634	2,776,664
	소계	935,000	958,690	982,550	1,011,090	1,036,634	4,923,964
세출	광역치매센터 운영	588,000	600,000	611,000	628,000	640,000	3,067,000
	치매치료비 지원	1,046,000	1,077,380	1,109,700	1,142,980	1,177,268	5,553,328
	치매주간보호센터	4,036,000	4,157,080	4,281,792	4,410,245	4,542,552	21,427,669
	치매통합관리센터	1,556,000	1,602,680	1,650,760	1,700,282	1,751,290	8,261,012
	소계	7,226,000	7,437,140	7,653,252	7,881,507	8,111,110	38,309,009
재원 조달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및 시,군·구비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및 시,군·구비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및 시,군·구비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및 시,군·구비	보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및 시,군·구비	
국 비		935,000	958,690	982,550	1,011,090	1,036,634	4,923,964
시비	소 계	3,233,500	3,329,225	3,427,001	3,529,409	3,633,238	17,152,373
	일반회계	3,233,500	3,329,225	3,427,001	3,529,409	3,633,238	17,152,373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3,057,500	3,149,225	3,243,701	3,341,008	3,441,238	16,232,672
민 간							
기 타							